

2023년 제2차 노사협의회 결과

□ 개 요

○ 일 시 : 2023. 7. 27(목), 15:00

○ 장 소 : 6층 접견실

○ 참석 위원 : 6명

- 사용자측 위원(3명)

· 주형철 원장, 김점산 기획조정본부장, 배미성 인사총무부장

- 근로자측 위원(3명)

· 이양주 선임연구위원, 김유나 연구원, 유진석 투자분석위원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내 용
협의사항	■ (사측) 일·생활 균형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 ■ (노측) 유연근무제 개선 ■ (노측) 가족수당 개선 ■ (노측) 보수규정 개선 ■ (노측) 연구직 명예퇴직제도 도입 ■ (노측) 무기계약직 대외활동 허가 ■ (노측) 연구연수제도 대상 확대
보고사항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 타	■ 규정·규칙 개정 관련 기존 협의결과에 따른 합의서 작성 ■ 경기도 「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기본방향」 설명 ■ 소통담당관제도 제안 및 노조측 추천 의뢰

※ 보고사항 중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경제적·재정적 상황은 1차 노사협의회에서 보고 완료

2023년 제2차 GRI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 일시	2022. 7. 27(목), 15:00~
회의 장소	6층 접견실
구 분	회의 내용 요약
협 의 사 항	1. 일·생활 균형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제안사항 - 장시간 초과근로 지양 - 가정의 날 확대(수요일 → 수요일, 금요일) ☐ 주요 발언 요지 김점산 위원 : 일·생활 균형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장시간 초과근로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고, 같은 취지로 가정의 날을 현행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확대해서 주 2회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합니다.
	☐ 협의 결과 일·생활 균형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장시간 초과근로를 지양하도록 하고, 가정의 날을 확대 운영
	2. 유연근무제 개선 ☐ 제안사항 전직원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 주요 발언 요지 김유나 위원 :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서 일·생활 균형을 비롯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월 단위로 정산하고, 의무근로시간대를 월요일에서 목요일 10시~15시로, 근로가능시간대를 6시~22시로 하는 것이 우리 연구원 특성에 맞을 것이라 생각하고, 세콤출퇴근기록을 타 기관과 같이 시스템에서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과근로와 연차휴가 부분이 중요한데, 초과근로는 직원이 사전에 신청해서 미리 승인을 받고 미리 승인 받은 시간은 인정하는 방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사전에 초과근로를 신청하였는데, 해당 직원이 원래 채워야 하는 월 총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사전에 신청했던 초과근로시간을 월 총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형행 횡수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하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0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여 제안했습니다. 김점산 위원 : 10분 단위 연차사용의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현 가능한 범위에서 시범 기간처럼 1차적으로 운영해보는 방안도 있을 텐데, 세부적으로는 추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협의 결과 -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유연근무제 개선 TF팀에서 논의 -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의견이 합치된 직군 먼저 시범 운영하는 방안 고려

	3. 가족수당 개선 ☐ 제안 배경 가족수당을 공무원 제도에 맞춰 증액 ☐ 주요 발언 요지 김유나 위원 : 우리 연구원의 가족수당 제도는 현재 배우자는 4만원, 그 밖의 가족은 2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첫째 자녀는 3만원, 둘째 자녀는 7만원, 셋째 자녀는 11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점산 위원 : 경기도와 의논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협의 결과 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증액 검토 4. 보수규정 개선 ☐ 제안 배경 무기계약직 직원도 보수규정 제6조제2항 단서(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해직 또는 면직될 때에는 당월분의 기본연봉월액 또는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조항을 적용 ☐ 주요 발언 요지 김유나 위원 : 현재 보수규정 제2조에 따르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수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계약직 운영규칙의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직원은 보수규정 제6조제2항 단서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기계약직원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점산 위원 : 공무원 제도로 비교해서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 같이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협의 결과 - 공무원 제도 등을 추가 검토 필요 5. 연구직 명예퇴직제도 도입 ☐ 제안 배경 관리직과 같이 연구직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제도를 도입 ☐ 주요 발언 요지 김유나 위원 : 연구직도 명예퇴직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점산 위원 : 연구직의 경우에는 관리직과 달리 재임용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제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협의 결과 - 연구직은 재임용 제도로 운영 중이라 검토 필요 6. 무기계약직 대외활동 허가 ☐ 제안 배경 대외활동규칙에 따라 무기계약직도 대외활동을 허가 ☐ 주요 발언 요지 김유나 위원 : 우리 연구원 대외활동규칙의 적용범위는 모든 상근직원인데, 최근에 무기계약직의 원고 작성에 대하여 승인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무
--	---

	기계약직도 원고를 쓰는 것에 대하여 승인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형철 위원 : “무기계약직 대외활동 허가” 안건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 검토와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협의 결과 - 대외활동규칙은 모든 상근직원을 적용 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운영의 측면에서 검토 필요
	7. 연구연수제도 대상 확대 ☐ 제안 배경 연구연수제도를 무기계약직, 투자분석원 등에게도 확대하여 운영 ☐ 주요 발언 요지 김유나 위원 : 무기계약직이나 투자분석원에 대해서도 연구연수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점산 위원 : 연구연수제도 확대와 관련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 협의 결과 - 현재 논의 중인 안건이므로 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공유
기 타	■ 규정·규칙 개정 관련 기존 협의결과에 따른 합의서 작성 ■ 경기도 「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기본방향」 설명 ■ 소통담당관제도 제안 및 노조측 추천 의뢰
보고사항 (서면대체)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참 석 위 원			
사 용 자 위 원		근 로 자 위 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주 형 철		이 양 주	
김 점 산		김 유 나	김유나
배 미 성		유 진 석	유진석